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6-166호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6-150호, 2026.7.14.)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6년 7월 30일
보건복지부장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I. 행위 제2장 검사료 중 ‘48시간 초과 홀터기록 검사의 급여기준’, ‘항-Infliximab 항체[정밀면역검사](정량)의 급여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항 목	제 목	세 부 인 정 사 항
나725 심전도검사	48시간 초과 홀터기록 검사의 급여기준	48시간 초과 홀터기록 검사인 나725다(2) 심전도 검사-심전도 감시-홀터기록 나) 48시간 초과 7일 이내와 다) 7일 초과 14일 이내는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경우에 본인부담률 80%를 적용함. - 다 음 - 가. 적응증 1) 부정맥 증상이 있거나, 심전도에 부정맥이 기록되어 장시간

항 목	제 목	세 부 인 정 사 항
		모니터링이 필요한 경우 2) 반복되는 실신에 대한 원인을 찾기 위한 경우 3) 부정맥에 대한 시술적 치료(전극도자 절제술, 냉동 풍선 치료술 등) 또는 약물적 치료 후 부정맥의 재발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경우 4) 뇌졸중 이후 심방세동의 진단이 필요한 경우 5) 선천성 심장질환 수술 이후 부정맥 의심 증상이 있는 경우 ※ 선천성 심장질환자는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의 [별첨2] 본인부담금 산정특례 심장질환의 상병명, 수술명 및 약제성분명에 따라 상병명의 순환계통 및 대정맥혈관의 선천기형일 경우 산정함 나. 산정요건 1) 진료의사의 처방에 따라 환자가 홀터감시기를 일정기간 부착하여 저장된 심전도 기록을 요양기관 내에서 진료의사가 판독하여야 함 2) 검사시작부터 종료시점까지 연속으로 측정한 기록지가 있어야 하며, 진료의가 아래의 사항이 포함된 판독소견서를 작성하고 보관하여야 함 - 아 래 - 등록번호, 성명, 생년월일 또는 나이, 성별, 기록시작일시, 기록종료일시, 판독일시, 검사와 판독한 의사, 검사 소견, 결론, 의료기관명
누533 항-Infliximab 항체[정밀 면역검사] (정량)	누533 항-Infliximab 항체[정밀 면역검사] (정량)의 급여기준	누533 항-Infliximab 항체[정밀면역검사](정량) 검사는 Infliximab 약물치료 중인 환자의 Infliximab 혈중농도가 $3.0\mu\text{g}/\text{ml}$ 미만으로 확인되어 실시한 경우, 다음과 같이 요양급여를 인정함 - 다 음 - 1. 염증성 장질환(크론병, 궤양성 대장염) 환자는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본인부담률 50%로 적용함 2. 상기 1. 이외 시행하는 경우에는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본인부담률 80%로 적용함

Ⅲ. 치료재료 제4장 처치 및 수술료 등 중 ‘복강경 탈장 수술 메쉬 고정용 스테플 급여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 목	세 부 인 정 사 항
복강경 탈장 수술 메쉬 고정용 치료재료의 급여기준	1. 복강경 탈장 수술 메쉬 고정용 치료재료는 복벽탈장, 절개탈장 및 서혜부 탈장의 복강경 수술시 다음과 같은 경우에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복강경 탈장 수술 메쉬 고정용 스테플은 본인부담률 80%, 복강경 탈장 수술 메쉬 고정용 접착제는 본인부담률을 90%로 적용함. - 다 음 - 가. 적응증 1) 복벽탈장, 절개탈장: Abdominal Wall Defect의 장경이 4cm 이상인 경우 2) 서혜부 탈장: Hernia Defect의 장경이 3cm 이상인 경우 3) 재발 탈장인 경우 4) BMI $\geq$ 25kg/m²인 경우 나. 급여개수 1) 복강경 탈장 수술 메쉬 고정용 스테플: 수술당 최대 5개 이내 실사용량을 인정함. 2) 복강경 탈장 수술 메쉬 고정용 접착제: 수술당 1개 인정함. 2. 상기 1항의 적응증 및 인정개수를 초과하여 사용한 경우에는 그 비용을 별도산정 할 수 없음. 3. ‘복강경 탈장 수술 메쉬 고정용 스테플’과 ‘복강경 탈장 수술 메쉬 고정용 접착제’를 동시 사용한 경우 1종만 인정함. 4.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상 복강경 탈장 수술 메쉬 고정용 치료재료에 해당하는 중분류명은 아래와 같음. - 아 래 - 가. 복강경 탈장 수술 메쉬 고정용 스테플 나. 복강경 탈장 수술 메쉬 고정용 접착제

Ⅲ. 치료재료 제6장 내시경하 시술료 중 ‘내시경하 담췌관 ACCESS CATHETER의 급여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 목	세 부 인 정 사 항
내시경하 담췌관 ACCESS CATHETER의 급여기준	도관 기반의 담(췌)관경 검사 및 역행성 담췌관 내시경 수술 시 사용하는 내시경하 담췌관 ACCESS CATHETER는 다음과 같은 경우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본인부담률 50%로 요양급여를 인정함 - 다 음 - 가. 급여대상 1) 담도 및 췌장 병변의 진단검사 악성종양이 의심되어 내시경적 역행성 담(췌)관조영술로 조직 검사 또는 세포진 검사(Cytology Brush)를 시행하였으나 확진되지 않은 경우 2) 담(췌)석 제거 난치성 담(췌)관 결석 또는 거대 담관 결석에서 자776라 담(췌)석 제거술 실패 후 재시행한 경우 3) 담(췌)관 협착 역행성 담췌관 내시경 수술(자776나, 자776다, 자776라) 시 담(췌)관 협착으로 가이드와이어(guide wire)가 통과되지 않아 더 이상의 진단 또는 치료 시술을 시행할 수 없는 경우 나. 급여개수: 치료기간 중 1개

부 칙

이 고시는 2026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I. 행위 제2장 검사료		I. 행위 제2장 검사료		
제 목	세 부 인 정 사 항	제 목	세 부 인 정 사 항	비 고
48시간 초과 홀터기록 검사의 급여기준	48시간 초과 홀터기록 검사인 나725다(2) 심전도 검사-심전도 감시-홀터기록 나) 48시간 초과 7일 이내와 다) 7일 초과 14일 이내는 다음의 경우에 요양급여함. - 다 음 - 가. 적응증 1) 부정맥 증상이 있거나, 심전도에 부정맥이 기록되어 장시간 모니터링이 필요한 경우 2) 반복되는 실신에 대한 원인을 찾기 위한 경우 3) 부정맥에 대한 시술적 치료(전극도자 절제술, 냉동 풍선 치료술 등) 또는 약물적 치료 후 부정맥의 재발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경우 4) 뇌졸중 이후 심방세동의 진단이 필요한 경우	48시간 초과 홀터기록 검사의 급여기준	48시간 초과 홀터기록 검사인 나725다(2) 심전도 검사-심전도 감시-홀터기록 나) 48시간 초과 7일 이내와 다) 7일 초과 14일 이내는 「 <u>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u> 」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경우에 본인부담률 80%를 적용함. - 다 음 - 가. 적응증 1) 부정맥 증상이 있거나, 심전도에 부정맥이 기록되어 장시간 모니터링이 필요한 경우 2) 반복되는 실신에 대한 원인을 찾기 위한 경우 3) 부정맥에 대한 시술적 치료(전극도자 절제술, 냉동 풍선 치료술 등) 또는 약물적 치료 후 부정맥의 재발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경우 4) 뇌졸중 이후 심방세동의 진단이 필요한 경우	(개정 사유) 선별급여 적합성평가 결과에 따른 급여기준 개정

현행	개정
나. 산정요건 1) 진료의사의 처방에 따라 환자가 홀터감시기를 일정기간 부착하여 저장된 심전도 기록을 요양기관 내에서 진료의사가 판독하여야 함 2) 검사시작부터 종료시점까지 연속으로 측정된 기록지가 있어야 하며, 진료의가 아래의 사항이 포함된 판독소견서를 작성하고 보관하여야 함 - 아 래 - 등록번호, 성명, 생년월일 또는 나이, 성별, 기록시작일시, 기록종료일시, 판독일시, 검사와 판독한 의사, 검사 소견, 결론, 의료기관명	5) 선천성 심장질환 수술 이후 부정맥 의심 증상이 있는 경우 ※ 선천성 심장질환자는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의 [별첨2] 본인부담금 산정특례 심장질환의 상병명, 수술명 및 약제성분명에 따라 상병명의 순환계통 및 대정맥혈관의 선천기형일 경우 산정함 나. 산정요건 1) 진료의사의 처방에 따라 환자가 홀터감시기를 일정기간 부착하여 저장된 심전도 기록을 요양기관 내에서 진료의사가 판독하여야 함 2) 검사시작부터 종료시점까지 연속으로 측정된 기록지가 있어야 하며, 진료의가 아래의 사항이 포함된 판독소견서를 작성하고 보관하여야 함 - 아 래 - 등록번호, 성명, 생년월일 또는 나이, 성별, 기록시작일시, 기록종료일시, 판독일시, 검사와 판독한 의사, 검사 소견, 결론, 의료기관명

현 행		개 정		
누533 항-Infliximab 항체[정밀면 역검사](정량) 의 급여기준	누533 항-Infliximab 항체[정밀면역검사](정량) 검사는 Infliximab 약물치료 중인 환자의 Infliximab 혈중농도가 $3.0\mu\text{g}/\text{ml}$ 미만으로 확인되어 실시한 경우 요양급여를 인정함 <신설>	누533 항-Infliximab 항체[정밀면 역검사](정량) 의 급여기준	누533 항-Infliximab 항체[정밀면역검사](정량) 검사는 Infliximab 약물치료 중인 환자의 Infliximab 혈중농도가 $3.0\mu\text{g}/\text{ml}$ 미만으로 확인되어 실시한 경우 다음과 같이 요양급여를 인정함 - 다 음 - 1. 염증성 장질환(크론병, 궤양성 대장염) 환자는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본인부담률 50%로 적용함 2. 상기 1. 이외 시행하는 경우에는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본인 부담률 80%로 적용함	(개정 사유) 선별급여 적합성평가 결과에 따른 급여기준 개정
III. 치료재료 제4장 처치 및 수술료 등		III. 치료재료 제4장 처치 및 수술료 등		
제 목	세 부 인 정 사 항	제 목	세 부 인 정 사 항	비 고
복강경 탈장 수술 메쉬 고정용 스태플 급여기준	1. 복강경 탈장 수술 메쉬 고정용 스태플은 복벽탈장 및 절개탈장의 복강경 수술시 다음과 같은 경우에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본인부담률 80%로 적용함.	복강경 탈장 수술 메쉬 고정용 치료재료의 급여기준	1. 복강경 탈장 수술 메쉬 고정용 치료재료는 복벽탈장, 절개탈장 및 서혜부 탈장의 복강경 수술시 다음과 같은 경우에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복강경 탈장 수술 메쉬 고정용 스태플은 본인부담률 80%, 복강경 탈장 수술	(개정 사유) 선별급여 적합성평가 결과에 따른 급여기준 개정

현 행		개 정	
	- 다 음 - 가. 적응증 1) Abdominal Wall Defect의 장경이 4cm 이상인 경우 2) 재발 탈장인 경우 3) BMI $\geq$ 25kg/m²인 경우 나. 급여개수: 수술당 최대 5개 이내 실사용량을 인정함. 2. 상기 1항의 적응증 및 인정개수를 초과하여 사용한 경우에는 그 비용을 별도산정 할 수 없음.		<u>메쉬 고정용 접착제는 본인부담률을 90%로 적용함.</u> - 다 음 - 가. 적응증 1) <u>복벽탈장, 절개탈장: Abdominal Wall Defect의 장경이 4cm 이상인 경우</u> 2) <u>서혜부 탈장: Hernia Defect의 장경이 3cm 이상인 경우</u> 3) <u>재발 탈장인 경우</u> 4) <u>BMI $\geq$ 25kg/m²인 경우</u> 나. 급여개수 1) <u>복강경 탈장 수술 메쉬 고정용 스테플: 수술당 최대 5개 이내 실사용량을 인정함.</u> 2) <u>복강경 탈장 수술 메쉬 고정용 접착제: 수술당 1개 인정함.</u> 2. 상기 1항의 적응증 및 인정개수를 초과하여 사용한 경우에는 그 비용을 별도산정 할 수 없음.

현행		개정		
			3. '복강경 탈장 수술 메쉬 고정용 스테플'과 '복강경 탈장 수술 메쉬 고정용 접착제'를 <u>동시 사용한 경우 1종만 인정함.</u> 4.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상 복강경 탈장 수술 메쉬 고정용 치료재료에 해당하는 중분류명은 아래와 같음. - 아 래 - 가. 복강경 탈장 수술 메쉬 고정용 스테플 나. 복강경 탈장 수술 메쉬 고정용 접착제	
제6장 내시경하 시술료		제6장 내시경하 시술료		
제 목	세 부 인 정 사 항	제 목	세 부 인 정 사 항	비 고
내시경하 담췌관 ACCESS CATHETER의 급여기준	도관 기반의 담(췌)관경 검사 및 역행성 담췌관 내시경 수술 시 사용하는 내시경하 담췌관 ACCESS CATHETER는 다음과 같은 경우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u>본인부담률 80%로</u> 요양급여를 인정함	내시경하 담췌관 ACCESS CATHETER의 급여기준	도관 기반의 담(췌)관경 검사 및 역행성 담췌관 내시경 수술 시 사용하는 내시경하 담췌관 ACCESS CATHETER는 다음과 같은 경우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u>본인부담률 50%로</u> 요양급여를 인정함	(개정 사유) 선별급여 적합성평가 결과에 따른 급여기준 개정

현 행		개 정	
	- 다 음 - 가. 급여대상 1) 담도 및 췌장 병변의 진단검사 악성종양이 의심되어 내시경적 역행성 담(췌)관조영술로 조직 검사 또는 세포진 검사(Cytology Brush)를 시행하였으나 확진되지 않은 경우 2) 담(췌)석 제거 난치성 담(췌)관 결석 또는 거대 담관 결석에서 자776라 담(췌)석 제거술 실패 후 재시행한 경우 3) 담(췌)관 협착 역행성 담췌관 내시경 수술(자776나, 자776다, 자776라) 시 담(췌)관 협착으로 가이드와이어(guide wire)가 통과되지 않아 더 이상의 진단 또는 치료 시술을 시행할 수 없는 경우 나. 급여개수: 치료기간 중 1개		- 다 음 - 가. 급여대상 1) 담도 및 췌장 병변의 진단검사 악성종양이 의심되어 내시경적 역행성 담(췌)관조영술로 조직 검사 또는 세포진 검사(Cytology Brush)를 시행하였으나 확진되지 않은 경우 2) 담(췌)석 제거 난치성 담(췌)관 결석 또는 거대 담관 결석에서 자776라 담(췌)석 제거술 실패 후 재시행한 경우 3) 담(췌)관 협착 역행성 담췌관 내시경 수술(자776나, 자776다, 자776라) 시 담(췌)관 협착으로 가이드와이어(guide wire)가 통과되지 않아 더 이상의 진단 또는 치료 시술을 시행할 수 없는 경우 나. 급여개수: 치료기간 중 1개